

구 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	2-2. 재난관리 물적·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기준	상황관리(대비)	회의개최	배점	시도 5, 시군구 5																
세부지표	2-2-2. (사전분석) 신속한 사전대비회의 및 상황판단회의 개최 실적																			
측정방법	<p>가. (시도, 시군구) 태풍대비(특보발효 등) 기관장 주재 사전대비회의 개최 실적 (2점)</p>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배 점</td> <td>개최실적 (①)</td> <td>산정점수</td> </tr> <tr> <td>산식</td> <td>최대 2점</td> <td></td> <td>(① 횟수×0.5점)</td> </tr> </table> <p>나. (시도, 시군구) 상황판단회의 개최 실적(3점) -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호, 가목</p>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배 점</td> <td>개최실적 (①)</td> <td>산정점수</td> </tr> <tr> <td>산식</td> <td>최대 3점</td> <td></td> <td>(① 횟수×0.3점)</td> </tr> </table>				구분	배 점	개최실적 (①)	산정점수	산식	최대 2점		(① 횟수×0.5점)	구분	배 점	개최실적 (①)	산정점수	산식	최대 3점		(① 횟수×0.3점)
구분	배 점	개최실적 (①)	산정점수																	
산식	최대 2점		(① 횟수×0.5점)																	
구분	배 점	개최실적 (①)	산정점수																	
산식	최대 3점		(① 횟수×0.3점)																	
측정기준	<p>가. 태풍 복상에 따른 기관장 사전대책회의 개최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태풍 특보 해당되지 않은 지자체는 결측값 적용(총점배점에서 제외) - 태풍특보(주의보, 경보) 발표이후 실시한 대책회의는 개최실적에 불인정 - 동일 태풍 내습 시 2회 이상 사전대책회의를 개최하여도 실적은 1회만 인정</p> <p>나. 상황판단회의 개최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상황판단회의 개최대상이 없는 경우 결측 값 적용(총점 배점에서 제외)</p>																			
증빙자료	<p>가. 기관장 사전대책회의 개최실적 - 개최실적 보고서(전자문서, 메모보고 등)</p> <p>나. 상황판단회의 개최 실적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서(전자문서, 메모보고)</p> <p>※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야 할 지역 행정안전부 제공 예정</p>																			
평가근거/자료	○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																			
문의처	○ 자연재난대응과 전인승(044-205-5237)																			

구 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	2-2. 재난관리 물적·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시설관리	배점	시도 10, 시군구 10														
세부지표	2-2-3 (사전분석)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17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추진 실적 (2.5점)																	
	<table border="1"> <tr> <th>구 분</th> <th>계획대비 100% 이상</th> <th>계획대비 ~ 90% 이상</th> <th>계획대비 ~ 80% 이상</th> <th>계획대비 ~ 70% 이상</th> <th>계획대비 70% 미만</th> </tr> <tr> <td>배 점</td> <td>2.5</td> <td>2</td> <td>1.5</td> <td>1</td> <td>0.5</td> </tr> </table>				구 분	계획대비 100% 이상	계획대비 ~ 90% 이상	계획대비 ~ 80% 이상	계획대비 ~ 70% 이상	계획대비 70% 미만	배 점	2.5	2	1.5	1	0.5		
	구 분	계획대비 100% 이상	계획대비 ~ 90% 이상	계획대비 ~ 80% 이상	계획대비 ~ 70% 이상	계획대비 70% 미만												
	배 점	2.5	2	1.5	1	0.5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대비 추진실적(%) : (금년도 준공된 내진보강사업 건수 + 금년도 준공된 내진성능평가 건수) / (기관별 내진보강대책상 내진보강사업 계획건수 + 내진성능평가 계획건수) × 100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진보강대책 건수 기준 *** 내진보강대책 미제출 기관은 0점 처리, 내진보강대책상 계획건수가 0건인 기관의 실적은 0건인 경우 1점 처리																	
	나. (시도, 시군구) 지진 안전성 표시제 발급 실적(3점)																	
	- 대상 :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17년도에 발급한 실적																	
	<table border="1">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4">발 급</th> </tr> <tr> <th>3 건 이상</th> <th>2 건</th> <th>1건</th> <th>실적 없음</th> </tr> <tr> <td>배점</td> <td>3</td> <td>2</td> <td>1</td> <td>0</td> </tr> </table>				구분	발 급				3 건 이상	2 건	1건	실적 없음	배점	3	2	1	0
	구분	발 급																
		3 건 이상	2 건	1건	실적 없음													
배점	3	2	1	0														
※ 광역은 중앙단위에서, 기초는 시·도에서 발급한 것을 말함																		
다. (시도, 시군구)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 실적(2점)																		
- 시도 : (Σ관할 시군구별 취득점수/관할 시군구)																		
<table border="1"> <tr> <th>구 분</th> <th>배 점</th> <th>감면 건수(①)</th> <th>산정점수</th> </tr> <tr> <td>산 식</td> <td>최대 2점</td> <td></td> <td>(① 건수×0.5점)</td> </tr> </table>				구 분	배 점	감면 건수(①)	산정점수	산 식	최대 2점		(① 건수×0.5점)							
구 분	배 점	감면 건수(①)	산정점수															
산 식	최대 2점		(① 건수×0.5점)															
라. (시도, 시군구) '17 공공시설물 내진예산 전년대비 확보실적 (2.5점)																		
<table border="1"> <tr> <th>구 분</th> <th>90%이상</th> <th>80%이상 ~90%미만</th> <th>70%이상 ~80%미만</th> <th>60%이상 ~70%미만</th> <th>50%이상 ~60%미만</th> </tr> <tr> <td>배 점</td> <td>2.5</td> <td>2.25</td> <td>2.0</td> <td>1.75</td> <td>1.5</td> </tr> </table>				구 분	90%이상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배 점	2.5	2.25	2.0	1.75	1.5			
구 분	90%이상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배 점	2.5	2.25	2.0	1.75	1.5													
<table border="1"> <tr> <th>구 분</th> <th>40%이상 ~50%미만</th> <th>30%이상 ~40%미만</th> <th>20%이상 ~30%미만</th> <th>10%이상 ~20%미만</th> <th>10% 미만</th> </tr> <tr> <td>배 점</td> <td>1.25</td> <td>1.0</td> <td>0.75</td> <td>0.5</td> <td>0.25</td> </tr> </table>				구 분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10%이상 ~20%미만	10% 미만	배 점	1.25	1.0	0.75	0.5	0.25			
구 분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10%이상 ~20%미만	10% 미만													
배 점	1.25	1.0	0.75	0.5	0.25													
* 공공시설물 내진예산 : 내진보강예산 + 내진성능평가예산 ** (금년도 공공시설물 내진예산/전년도 공공시설물 내진예산-1) × 100																		
측정기준	가. 전년도말까지 제출하는 금년도 내진보강대책상 내진보강사업 건수(평가포함) 대비 내진보강사업 (평가 포함) 완료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연말까지 준공된 사업에 한해 인정)																	
	나. 지진 안전성 표시제 발급건수에 따라 점수 부여																	
	-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조건 불충분으로 반려 또는 검토 중인 것은 실적 불인정 - 해당기관 및 산하기관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확인받은 실적 * 상급기관이 아닌 자체 해당기관에서 확인서 발급한 실적은 불인정																	
	다.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전년도 내진예산 대비 금년도 내진예산 확보실적에 따라 점수부여																	

증빙자료	가.(시도, 시군구)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추진 실적				
	기관명	내진보강대책상 계획된 사업 건수	연말까지 준공된 사업건수	추진율(%)	점수
	00시·도				
	00시군구				
	* 대책 및 추진결과는 내진보강정보관리시스템(www.ndms.go.kr)으로 제출 나. 지진 안전성 표시제 신청 및 발급확인서 사본 다.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 공문 사본 라. 내진예산 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예산서 사본(전·현 연도)				
평가근거/ 자료	○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 개정 통보 : 지진방재과-4180('15.10.30.) ○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확보 관련 지방세 감면제도 추진협조 요청 : 지진방재과-146(2016.1.13.)				
문의처	○ 지진방재정책과 박재신(044-205-5189)				

구 분	2. 재난관리 부서역량	2-2. 재난관리 물적·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상황관리(복구)	조례제정	배점	시도, 시군구 2-α										
세부지표	2-2-6. 일반(특별재난지역 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공포·시행 실적													
측정방법	<p>가. (시도, 시군구) 일반(특별재난지역 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공포·시행 실적(2, -7점)</p>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조례 공포</td> <td>조례(안) 의회제출</td> <td>조례(안) 입법예고</td> <td>조례 입법예고 전</td> </tr> <tr> <td>점 수</td> <td>2점</td> <td>-3점</td> <td>-5점</td> <td>-7점</td> </tr> </table>				구 분	조례 공포	조례(안) 의회제출	조례(안) 입법예고	조례 입법예고 전	점 수	2점	-3점	-5점	-7점
구 분	조례 공포	조례(안) 의회제출	조례(안) 입법예고	조례 입법예고 전										
점 수	2점	-3점	-5점	-7점										
측정기준	<p>가. 일반(특별재난지역 외) 사회재난에 대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여부 등 추진실적에 따라 점수 가,감 부여</p> <p>※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2017년 1월 개정)에 따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p>													
증빙자료	<p>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문</p> <p>- 자료 제출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자치법규를 조회한 출력물에 대하여 인정</p>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 개정규정(시행 2018.1.18)													
문의처	○ 복구지원과 고수정(044-205-5323)													

4. 기관역량 지표별 평가기준

구 분	4.기관역량	4-1. 기관장 리더십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홍보	배점	시도, 시군구 12																		
세부지표	4-1-1. 재난사전대비 재난 및 재해취약지역(시설물포함)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재난사전대비 재난 및 재해취약지역(시설물포함)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실적(10점)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8회 이상</td> <td>7회</td> <td>6회</td> <td>5회</td> <td>5회 미만</td> </tr> <tr> <td>기 관 장</td> <td>5점</td> <td>4점</td> <td>3점</td> <td>2점</td> <td>1점</td> </tr> <tr> <td>부기관장</td> <td>5점</td> <td>4점</td> <td>3점</td> <td>2점</td> <td>1점</td> </tr> </table>					구 분	8회 이상	7회	6회	5회	5회 미만	기 관 장	5점	4점	3점	2점	1점	부기관장	5점	4점	3점	2점
구 분	8회 이상	7회	6회	5회	5회 미만																	
기 관 장	5점	4점	3점	2점	1점																	
부기관장	5점	4점	3점	2점	1점																	
측정방법	나. (시도, 시군구) 재난사전대비 재난 및 재해취약지역(시설물포함)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결과 언론홍보 실적(2점)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6회 이상</td> <td>4회 이상</td> <td>2회 이상</td> <td>2회 미만</td> </tr> <tr> <td>배점</td> <td>2</td> <td>1.5</td> <td>1</td> <td>0</td> </tr> </table>					구분	6회 이상	4회 이상	2회 이상	2회 미만	배점	2	1.5	1	0							
구분	6회 이상	4회 이상	2회 이상	2회 미만																		
배점	2	1.5	1	0																		
측정기준	가. 재난사전대비 재난 및 재해취약지역(시설물포함)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재난발생 현장은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및 재해취약지역(시설물포함)을 동일 일자에 2개소 이상 방문한 경우 1회로 산정 - 기초자치단체 부기관장 이상이 광역자치단체 부기관장 이상을 수행하여 방문한 경우 각 지자체 실적으로 인정, 단 해당지자체 관할 지역에 한정함 - 기관장과 부기관장이 동시에 같은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 1회로 산정 																					
증빙자료	<p>※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 폭염관련 지역시설 포함</p> <p>※ (재해취약지역) 수해복구사업장 재해위험지구, 산사태위험지구, 배수펌프장 노후저수지 등 재해에 위험하거나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p>																					
	나. 언론홍보 실적에 따라 점수부여(자체 홈페이지 게시는 불인정)																					
증빙자료	가~나. 재난사전대비 재난 및 재해취약지역(시설물포함)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실적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연 번</td> <td>방문 일시</td> <td>지역·시설명</td> <td>방문자</td> <td>증빙</td> </tr> <tr> <td>기 관 장</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부기관장</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p>- 현장방문결과 보고서(전자문서) 또는 언론보도 스크랩 자료(※사진자료만 제시하는 경우 불인정함)</p>					구 분	연 번	방문 일시	지역·시설명	방문자	증빙	기 관 장						부기관장				
구 분	연 번	방문 일시	지역·시설명	방문자	증빙																	
기 관 장																						
부기관장																						
평가근거/자료	○ 2018년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의처	○ 재난관리정책과 최원철(044-205-5124)																					

구 분	4. 기관역량	4-1. 기관장 리더십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조직	배점	시도, 시군구 20																								
세부지표	4-1-3. 재난관리 조직 보강 추진실적																											
측정방법	<p>가.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 조직 인원증원 및 방재안전직 채용 실적 (18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리 조직 인원 증원 및 방재안전직 전직 실적 : 1인당 2점(*최대 6점으로 하고 재난관리 주관 부서에 정식 발령을 받은 것에 한함) ※ 시·도는 실·국, 시·군·구·행정시는 과 단위를 말함 - 방재안전직 신규채용 실적 : 1인당 3점(*최대 12점으로 하고 정식 발령을 받은 것에 한함) ※ 발령기간 : 1.1~12.31까지 ※ 발령받은 기관별로 점수를 가져감(예, 시·도에서 일괄 10명을 채용하여 시군구별로 10명 모두를 발령한 경우 시·도에서는 점수를 가져가지 못함) <p>나.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평균 근무기간 (2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구분</td> <td>2년 이상</td>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1년 미만</td> </tr> <tr> <td>배점</td> <td>2</td> <td>1</td> <td>0</td> </tr> </table>				구분	2년 이상	1년 이상 ~ 2년 미만	1년 미만	배점	2	1	0																
구분	2년 이상	1년 이상 ~ 2년 미만	1년 미만																									
배점	2	1	0																									
측정기준	<p>가. 재난관리 조직 인원 증원 및 전직실적 / 방재안전직 신규채용 실적에 따라 점수부여</p> <p>나. 재난관리 업무담당자 평균 근무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근무기간은 평가일 기준으로부터 역으로 계산하여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인정 																											
증빙자료	<p>가. 재난관리 조직 인원 증원·전직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현원 대비 당해연도 증원 및 전직실적 서류 제출 - 방재안전직 신규채용 인사발령 문서 <p>나.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평균 근무기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부서명</td> <td>직위(급)</td> <td>성명</td> <td>현부서 임용일</td> <td>실 재직기간</td> <td>비 고</td> </tr> <tr> <td>계</td> <td></td> <td></td> <td></td> <td>* 평균 재직기간 작성</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부서명	직위(급)	성명	현부서 임용일	실 재직기간	비 고	계				* 평균 재직기간 작성													
부서명	직위(급)	성명	현부서 임용일	실 재직기간	비 고																							
계				* 평균 재직기간 작성																								
평가근거/ 자료	○ 2018년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재난관리정책과 최원철(044-205-5124)																											

구 분	4. 기관역량	4-1. 기관장 리더십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인사	배점	시도 15, 시군구 15																				
세부지표	4-1-4.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추진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부여실적 (15점)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 공무원 인사가점 규정 자체시행 여부(10점)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가점부여 시행</td> <td>인사지침 반영완료</td> <td>계획 기관장결재 등 절차 이행 중</td> <td>미실시</td> </tr> <tr> <td>배점</td> <td>10</td> <td>8</td> <td>6</td> <td>0</td> </tr> </table>				구분	가점부여 시행	인사지침 반영완료	계획 기관장결재 등 절차 이행 중	미실시	배점	10	8	6	0										
	구분	가점부여 시행	인사지침 반영완료	계획 기관장결재 등 절차 이행 중	미실시																			
배점	10	8	6	0																				
-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5점) * 전보 시 선택권, 국내·외 연수, 특별휴가, 시간외 수당 개선, 자체 표창 등																								
측정기준	가.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 인사통합지침」 개정('16.5.19.관보)에 따른 근평 가점 규정 마련·시행 여부를 말함 -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 재난관리 총괄 본부, 실·국 및 시·군·구·행정시는 재난관리주관 업무 담당부서의 담당자, 담당 계장, 과장을 말함) * 전보시 선택권 * 국내·외 연수(배낭여행 등) * 특별휴가의 재난업무 유공자 특별휴가 등 인정 * 재난업무 비상근무의 시간외근무수당 개선 시 인정 ※ 상한시간 적용예외(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5조4항2호 또는 3호) 인정여부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기여자 인센티브 불인정 * 재난관리업무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당기관 자체 표창한 경우 인정 * 재난관리와 관계없는 을지연습 포상은 불인정 - 기타 인정할 사항은 중앙재난관리평가단 최종 검토회의에서 결정 * 평가결과 점수표 비교란에 “인정내용” 기재																							
	가. 가점부여 등 자체 인사운영지침 반영 및 시행근거 문서사본 - 근평가점지침 등 관련 서류 사본 및 당해 연도 실제 가점 부여 증빙 서류 등 (평가단 현장 확인병행) -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																							
증빙자료	<table border="1"> <tr> <td>연번</td> <td>일자</td> <td>건명</td> <td>내용</td> <td>비고</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합계</td> <td></td> <td>○ 종 부여</td> <td></td> <td></td> </tr> <tr> <td>점수</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 관련계획서(전자문서) 및 실적자료 등				연번	일자	건명	내용	비고						합계		○ 종 부여			점수				
연번	일자	건명	내용	비고																				
합계		○ 종 부여																						
점수																								
평가근거/ 자료	○ 2018년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재난관리정책과 최원철(044-205-5124)																							

구 분	4.기관역량	4-4. 혁신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환류	배점	시도 13, 시군구 8								
세부지표	4-4-2. (사전분석)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계획 수립(3점)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기관장 결재</td> <td>국장(광역)/부기관장(기초) 결재</td> <td>과장이하 결재</td> </tr> <tr> <td>배점</td> <td>3</td> <td>2</td> <td>0</td> </tr> </table>				구분	기관장 결재	국장(광역)/부기관장(기초) 결재	과장이하 결재	배점	3	2	0
	구분	기관장 결재	국장(광역)/부기관장(기초) 결재	과장이하 결재								
	배점	3	2	0								
나. (시도, 시군구)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실적(5점)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배점 (①)</td> <td>개선율 (②)</td> <td>점수(채점)[①×②]</td> </tr> <tr> <td>배점</td> <td>5</td> <td></td> <td></td> </tr> </table>				구분	배점 (①)	개선율 (②)	점수(채점)[①×②]	배점	5			
구분	배점 (①)	개선율 (②)	점수(채점)[①×②]									
배점	5											
측정기준	가. 미흡사항 개선계획 수립은 결재단계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											
	나.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미흡사항이 없는 지자체는 결측 값 적용(총점 배점에서 제외) 다. 시군구 개선율에 따라 점수부여											
증빙자료	가. 광역지자체는 행정안전부에, 시군구는 시도에 개선계획 수립제출 및 개선실적(분기별)제출											
	- 개선계획 수립 : 일자/ 결재 사본 나. 미흡사항 개선실적 반영(4/4분기 까지 실적) - 시도 및 시군구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 미흡사항 개선실적을 반영하여 점수부여 다. (시도) 시군구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실적											
	<table border="1"> <tr> <td>미흡사항(건)</td> <td>개선실적(건)</td> <td>개선율</td> <td>점수</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 개선율 = [개선완료 실적(건)/미흡사항(건)]				미흡사항(건)	개선실적(건)	개선율	점수				
미흡사항(건)	개선실적(건)	개선율	점수									
평가근거/ 자료	○ 2018년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재난관리정책과 최원철(044-205-5124)											